

제 안 요 청 서

(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)

2026. 9.



문의처			
구분	소속부서	성명	전화번호
과업담당	정책협력실	서병훈 팀장	02-6677-3668
계약담당	정책협력실	배은영 사원	02-793-2465

목 차

I . 과업개요	1
① 용역개요	
② 주요 과제내용	
③ 과업 수행 지침	
④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	
II .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자 선정	8
① 사업수행자 선정방식	
② 참가자격	
③ 제안서 평가 기준	
④ 우선협상대상자 선정	
⑤ 협상의 범위	
⑥ 협상기간	
III . 입찰 및 제안서 제출	12
① 입찰참가등록	
② 제안 요구사항	
③ 제출서류	
IV . 일반사항	14
V . 문의처	15

1. 용역개요

○ 과 제 명 : KOIMA 지수의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

○ 소요예산 : 금사천만원정(40,000,000원) * 부가가치세 포함

○ 과제기간 : 계약 체결일 ~ '26. 12. 10.

* 연구기간 및 용역비는 협상결과에 따라 수정될 수 있음

○ 추진배경

- KOIMA 지수는 1996년 도입 이후 국내 원자재 시장 분석과 수입기업의 가격 동향 파악을 위한 대표 지표로 활용되어 왔으나, 산출체계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·개편이 이루어지지 않음.
- 최근 글로벌 공급망 재편, 원자재 거래구조 변화 및 산업구조 고도화 등 대외 환경 변화로 현행 지수의 대표성·시의성·활용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증대됨.
- 이에 KOIMA 지수의 산출체계, 대상 품목 및 가중치, 운영방식 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함.

○ 업체선정방법 : 제한경쟁입찰(협상에 의한 계약)

- 근거 : 한국수입협회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를 준용

2. 주요 과제내용: KOIMA 지수의 대표성·신뢰성 및 활용성 제고를 위해 현행 운영체계를 진단하고, 국내외 사례 분석을 바탕으로 산출체계 개선과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

가. KOIMA 지수 산출체계 및 운영현황 진단

○ KOIMA 지수 운영현황 분석

- KOIMA 지수의 개발 배경, 운영 목적 및 활용 현황을 조사·분석
 - 지수 산출 절차, 운영체계 및 관리체계 전반을 검토하여 현행 운영 실태를 진단

○ 산출체계 적정성 검토

- 대상 품목, 가격조사 방식, 가중치 및 지수 산출방법의 적정성 분석
 - 대표성, 객관성, 시의성 및 신뢰성 측면에서 현행 산출체계의 한계 도출

○ 이용자 수요 및 활용도 조사

- 기업,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 등을 대상으로 KOIMA 지수 활용 현황과 개선 수요 조사
 - 이용자 요구사항을 분석하여 지수 개선 방향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

나. 국내외 원자재 가격지수 운영사례 비교·분석

○ 해외 주요 원자재 가격지수 운영사례 조사

- CRB Index, Bloomberg Commodity Index, S&P GSCI 등 주요 해외 지수의 운영체계 조사
 - 대상 품목, 가중치 산정방식, 지수 개편 주기 및 관리체계 분석

○ 국내 유사 지수 운영사례 조사

- 국내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서 운영 중인 원자재 가격지수의

운영 사례 조사

- 산출방법 및 운영체계의 특징과 장단점 비교 분석

○ 벤치마킹 및 시사점 도출

- 국내외 사례를 비교하여 KOIMA 지수에 적용 가능한 개선 요소 발굴
- 글로벌 기준과 국내 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선 방향 제시

다. KOIMA 지수 개선방안 마련

○ 지수 산출체계 개선(안) 마련

- 대상 품목 선정기준, 가격조사 방식 및 지수 산출방법 개선방안 제시
- 산업구조와 수입구조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합리적인 산출체계 설계

○ 품목 및 가중치 개편 방안 마련

- 수입 규모, 산업 중요도 및 시장 영향력을 고려한 대상 품목 및 가중치 재설계
- 주기적인 품목 조정 및 가중치 갱신 기준 마련

○ 품질관리 체계 구축

- 데이터 검증, 품질관리 및 정기 개편 절차 등 운영기준 마련
- 지수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관리체계 제안

라. 중장기 운영체계 및 활용방안 제시

○ 운영체계 고도화 방안

- KOIMA 지수의 지속적인 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제시
 - 정기 개편 주기, 운영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 마련

○ 활용성 제고 방안

- 기업, 정부 및 연구기관의 활용 확대를 위한 서비스 개선방안 제시
 - 부문별 지수 개발, 통계정보 제공 확대 및 분석 콘텐츠 강화 방안 마련

○ 단계별 추진 로드맵 수립

- 단기·중기·장기 추진과제를 구분하여 실행계획 제시
 - 예산, 추진 일정 및 기대효과를 포함한 중장기 발전 로드맵 수립

※ 상기 외에 연구용역 수행 과정에서 용역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수행자와 협의하여 정한 사항을 연구용역 범위에 추가할 수 있음

3. 과업 수행 지침

- 과업수행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.
- 연구 추진 과정에서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부서와 사전 협의하여 방침을 정하여야 한다.
- 연구수행은 연구과업을 지휘, 총괄하는 연구책임자를 중심으로 유기적이며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.
- 계약자는 본 사업 목적, 취지, 성격 등을 명확히 이해하고 수입협회 정책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공정성과 객관성 있는 산출 내역을 제시하여야 한다.
- 경비는 사후정산을 원칙으로 하고, 정산금액은 계약상의 경비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.
- 수입협회는 용역안에 대하여 심사권을 가지며,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중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입협회와 수시 설명 및 협의를 하여야 하며, 심사 및 협의 결과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- 본 과업수행시 제반규정과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나 문구 해석으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그래도 의견이 상이할 경우 관련 법규 규정에 따르거나 통상의 의미에 따라 해석한다.
- 본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제공된 자료는 성과물 또는 과업 수행 내용을 수입협회와 사전 승인 없이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, 외부로 유출되었을 경우에는 민·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행정조치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.
- 과업수행자는 최종 용역보고서에 대한 시안은 완료일 7일 이전에 완성하여 수입협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, 수입협회에서 용역보고회 요구가 있을 시는 용역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.

4. 과업의 성과보고 및 제출

○ 착수보고

-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 추진 일정표, 과업수행자 명단 등을 첨부하여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고, 수요기관의 담당자 외에 관련 분야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2인 이상과 회의를 통해 연구계획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○ 중간보고

- 용역 수행자는 수요기관 요청 시 과업수행 중간에 진행 상황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고, 수요기관의 담당자 외에 관련 분야 학계 및 업계의 전문가 2인 이상과 회의를 통해 연구진행 상황에 대한 자문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.

○ 최종보고

- 최종보고서 원고를 계약만료일 7일 이전에 사업부서에 제출하여 원고를 검토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계약 만료일까지 관련 자료를 포함한 최종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하며, 필요시 연구 결과에 대해 관계기관에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.
- 최종보고 시, 보고서와는 별도로 연구 결과물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.

○ 보고서 제출

- 최종보고서는 용역 발주처와 수시 협의를 통해 보완·정리된 사항을 제출(인쇄본 3부, A4)해야 하며, 본 연구 결과의 보존과 확산·활용의 관점에서 연구과정에서 입수·조사된 내용을 첨부하여 인쇄·제출해야 함

5. 과업 추진 일정

번호	세부 연구 내용	추진 일정(10주)											
		1-3			4-6			7-8			9-10		
1	착수보고 및 자료조사												
2	과업 연구 및 수행												
3	중간보고 및 최종보고서 제출												

* 추진 일정은 협의에 따라 변동 가능

1. 사업수행자 선정방식

- 입찰 방법 : 제한경쟁입찰
- 계약 방법 :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
- 관련 규정
 - 한국수입협회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를 준용한 “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”
 -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(재정경제부 계약예규)

2. 참가자격

-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(자)
 - 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”(조달청)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(G2B) 시스템에 학술연구용역[업종코드 1169]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
 - 다음 각 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
 - 「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」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·소기업·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·소상공인확인서(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)를 소지한 자
 - 단,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의 3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 참여 가능
- * 다만 중소기업확인서를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업체는 입찰참가가

가능하나 개찰 후 5일까지 확인이 되지 않거나 입찰참가자격상 기업구분이 다른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음

* <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>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음

*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

- 입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 「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제1호 적용하여 예외적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

○ 본 용역은 하도급 불가 사업

○ 기타사항은 ‘(계약예규)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’에 의함

3. 제안서 평가 기준

○ 제안서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내용을 검토 후 심사 기준에 따라 종합평가를 실시한다.

○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종합평가를 실시하되, 종합 평가는 기술평가 90%와 가격평가 10%의 비중을 적용한다.

<종합평가 기준표>

평가 항목		평가 요소	
기술 능력 평가	기술·지식능력(30)	○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경험도	10
		○ 사업수행 조직체계의 적정성 ○ 참여인력의 적정성	10
		○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	10
	사업수행계획(30)	○ 추진목표 이해도 및 사업추진 전략	15
		○ 수행일정의 합리성 및 수행절차의 적정성	15
	연구방식의 타당성(20)	○ 제안내용의 차별성 및 경쟁력 ○ 연구방법의 타당성	20
가격 평가	재무구조·경영상태(10)	○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가	10
	제안가격(10)	○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	10
합 계(총 100점 만점)			100

* 재정경제부 (계약예규) 「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」 "[별표] 제안서의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"의 '입찰가격 평점산식'에 따름

<기술능력평가(정성평가) 기준표>

등급	매우우수	우수	보통	미흡	매우미흡
점수	배점의 100%	배점의 90%	배점의 80%	배점의 70%	배점의 60%

<기술능력평가(재무구조·경영상태) 기준표>

신용평가등급			평점
회사채	기업어음	기업신용평가등급	
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A1, A2+, A20, A2-, A3+, A30	AAA, AA+, AA0, AA-, A+, A0, A-, BBB+, BBB0	배점의 100%
BBB-, BB+, BB0, BB-	A3-, B+, B0	BBB-, BB+, BB0, BB-	배점의 95%
B+, B0, B-	B-	B+, B0, B-	배점의 90%
CCC+ 이하	C 이하	CCC+ 이하	배점의 70%

* 「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」 "[별표8] 경영상태 평가기준"에 따름

4. 우선협상대상자 선정

- 협상대상업체 선정 및 낙찰자 결정, 계약방법 등은 한국수입협회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43조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(계약예규)에 따름
-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%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,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한 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순서를 결정
-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,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
- 1순위 협상대상자와 사업의 내용, 이행일정, 제안가격 등 제안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,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차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생략

- 1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
- 평가기준 중 평가항목별 점수는 공개하되,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아니함
-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기술능력평가 점수로 산출

5. 협상의 범위

- 우선협상적격자로 선정된 업체가 제안한 과업 내용, 이행 일정, 제시가격 및 평가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,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가능

6. 협상기간

-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

Ⅲ

입찰 및 제안서 제출

1. 입찰참가등록

- 등록기간 및 장소 : 입찰공고에 따름
- 제출서류 : 제안서 등 입찰공고에 따른 서류
- 제안서 제출
 - 제출기간 및 장소 : 입찰공고에 따름
 - 제출방법 : 공고서 참조

2. 제안 요구사항

- 제안자는 연구수행 과정에서 진행상황 점검을 위한 수입협회에 중간점검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제안하여야 하며, 과업 종료 후 사후관리기간을 6개월 이상으로 제안하여야 함.
- 제안자는 과업수행 중 발생하는 각종 산출물의 명세서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.
- 제안자는 본 제안요청서에 언급하지 않았으나, 본 과업수행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제시할 수 있음.

3. 제출서류

- 소기업·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비영리법인 확인(증빙)서 1부
-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
- 제안서 1부(별지서식 2호)
- 확약서 및 보안각서 각 1부(별지서식 4호 및 별지서식 5호)
-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
-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(별지서식 7호)

- 공동계약 제출서류 (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하는 업체만 해당)
 - 1)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: 공고기간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
 - 2) 공동수급체를 중복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.
 - 3)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할 수 없습니다.
 - 4) 공동수급체는 5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, 참여지분율은 각 수급체별로 10% 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.
 - 5) 기타 입찰공고문(과업지시서 등 입찰제반사항 포함)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동계약 운용요령(계약예규 제715호 2024.9.13.)에 의합니다.
- * 공동수급으로 참여시는 반드시 '공동계약 운용요령'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.

IV

일반사항

- 제안서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.
- 제출된 제안서는 최종 계약대상 업체로의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.
- 제안서 내용에 허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업체선정에서 제외 또는 계약해지 사유가 된다.
- 제안서는 대한민국 표준어로 작성하여야 하며, 필요시 영문 표기를 병행할 수 있다.
-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수입협회에서 요청하지 않은 한 변경할 수 없으며, 계약 체결시 계약 조건의 일부로 간주한다.
- 필요시 수입협회는 입찰참가자에게 추가 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, 추가 제출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
-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. 다만,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.
-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,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수입협회의 입증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.
-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,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한다.

1. 과업 내용 문의

- 한국수입협회 정책협력실 서병훈 팀장
 - (연락처) 02-6677-3668
 - (E-mail) policy@koima.or.kr

2. 입찰절차 및 서류제출 문의

- 한국수입협회 정책협력실 배은영 사원
 - (연락처) 02-793-2465
 - (E-mail) policy@koima.or.kr